

第 51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5. 6. 22 ~ 6. 2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1984年12月

1984年12月

1984年12月

1984年12月

목 차

1995 • 6 • 통권 제42호

I.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17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1/2) 19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5

IV. 별 책 부 록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2/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6월 22일 (목요일) 13시 00분

議事日程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3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

[제51회-제1차]

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3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6월 16일 교육위원회 공고 제95-6호로 긴급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금회기 처리하실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의안과 관련하여 영동농·공고 등 현장방문이 있으시겠습니다.

2. 제5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0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 간으로 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6월 23일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 계획안

(13시 02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세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으로는 청주고등학교 과학관 1,350평방미터와 청주교육청 관내 신설 용암국민학교 외 3개교의 부속시설 6,895평방미터로 총 8,245평방미터를 신 증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처분으로는 영동농·공고 실습지 6,796평방미터로 폐교된 영동구강분교, 괴산 삼방분교의 교지 만 9,779평방미터 등 총 2만 6,140미터의 토지와 동 폐지학교 건물 2,260미터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1/2) : 별첨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2/2) : 별책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현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

(13시 0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응복, 김사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김사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휴회기간에 실시되는 현장방문에는 모든 위원님께서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제51회-제1차]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1/2) : 별첨2

※ 별책부록

-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2/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5년 6월 24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2.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11시 00분)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 경과보고

(11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먼저 권혁풍위원 외 3인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
 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
 명 들으시고 현지 확인을 거치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권
 혁풍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게 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
 경계획안

(11시 0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권혁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풍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권혁풍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199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금회 변경계획안 중 금년도 폐지된 영동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의 매각 계획은 현장을 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동교는 강을 끼고 있는 등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매각하기 보다는 현 상태로 보존하면서 장차 학생야영장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동계획안 중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사족을 붙인다고 할까, 설명을 더 드린다며는 사정을 알고 보니까 본

매각계획된 그 학교의 매각대금은 신축 도서관에 재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동의 그 도서관 사정이 참 낡고 시급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속히 도서관을 신축할 필요성에서 이러한 제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불원간 GNP 5%를 확보하신다는 그 확답이 계셨고, 머지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며는 그 도서관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풍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권혁풍위원께서 원안 내용에 대하여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이재희위원 질의하시죠.

(이재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위원 이재희

이재희 교육위원을습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비교적 폐교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동의안도 제안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영동 현장방문을 하고 한 두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폐교가 되려는 폐교관리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우선 계속적으로 학교 재산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과 매각이 필요한 것과 구분을 해서 매각이 필요한 것은 빨리 매각을 좀 독촉을 하고 계속 보존할 것은 보존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봉학교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이렇게 사전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과 매매할 계획을 구분해 났으며는 이런 수정동의안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폐교가 되려는 폐교관리위원회를 교육위원이라든지, 지역 교육청 관계관이라든지, 또는 학교자문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폐교가 될 때는 계속적으로 보존할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하는 걸 학기 초에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걸 우선 한번 말씀

을 드리고 어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실습지가 참 상당히 좋은 그런 땅이 이 도서관 부지와 경찰서 부지로 할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 그 평수가 지금 도서관 부지, 경찰서 부지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 토지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두가지 질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김영세

예, 이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예, 질문없으시죠.

어제 뭐 현장에서 아마 영동농·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영동교육장에게 의견들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밝혔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또 그 해명을 듣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듭 질문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폐교학교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보존이나 매각을

[제51회-제2차]

연초에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렵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달립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가 지역은 지역교육청에 지정이 돼 있고, 저희 도는 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겠다, 또는 보존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 오며는 저희들은 도에서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직속기관의 재산은 고등학교의 재산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법정 위원회나 이런 거를 전부 정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지금 축소를 해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폐교관리위원회를 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까마는 현재 그를 갈음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둘째번에 영동농고 실습지가 현재 도서관과 경찰서의 부지로 지금 활용하도록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 활용계획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중등국 소관이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현지를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행정 타운으로 아마 영동읍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농·공고 학교장의 계획은 아마 이것을 나머지 실습지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고에 지금 실습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 달리 지금 기계 영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실습답이 아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나머지 실습지도 매각을 해서 학교에 지금 부족한 시설이나 지자체 활용에 확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에, 그러면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위원 이재희**

됐습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권혁풍위원님 질의하시죠.

● **위원 권혁풍**

영동농·공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세웠는데 지금 여러가지 각종의 이기주의가 지금 사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관 이기주의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기관 대 기관에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 내 기관이 다른 기관에 지지 않겠다, 혹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의지, 이 두가지 의지가 있어서 그 중간에서 어떤 편에 들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져야 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영동농고 실습지 매각을 처음부터 발상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영동농고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인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혹시 경찰서의 필요

에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물론 일방적인 필요라는 건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같이 곁하게 되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영동경찰서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이 계획이 시뮬 저희들하고 교감이 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영동경찰서, 지금 현 위치하고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영동농·공고의 실습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저희한테 그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지에 바로 그 영동경찰서가 이수국민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현지 직원이 나가서 답사를 해 본 결과 그 땅이 그 사용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건물이 굉장히 낡아 있는데 그 쪽에서는 이 건물까지 우리가 사야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할 때 그거를 건물까지 가

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 건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교환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야 또 이 건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동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부적합하다, 우리가 교환은 할 수가 없는 실정 이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땅을 사가도록 매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영동경찰서에.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온 내용입니다.

결코 영동경찰서에서 저희 교육청에다 대고 무슨 압력을 넣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권혁풍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럼 영동농고에 그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판다, 이거죠.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거는 처음부터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농고 실습지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전부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길이 나고 하는 게 전부 돼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동도서관이 그 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이미 교육위원회에 몇차 교육위원회인지는 몰라도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공도서관이 가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전부터 영동경찰서에서는 그 쪽을 달라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농·공고에서 이견 동문이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좀 투합을 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시일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5월 말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동농·공고 교장선생님께서 이거를 매각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권혁풍

그래서 저 그 경찰서하면 물론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영동농·공고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이걸 매각하려는 제안이 먼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는데 아마 지금 일부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머지않아서 이게 날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도로가 완공된 뒤에 매각을 하면 지금 감정이 이상으로 상당한 액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꼭 그런 계획을 앞두고서, 눈앞에 두고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 지던 겁니다.

금방 뭐 이거 팔어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응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교환으로 그 땅하고 영동경찰서 땅하고 교환조건으로 해가지고 교섭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이게 영동경찰서가 이전을 해야겠다는 것이 그 쪽에서 추진이 돼가지고 뒤에 이게 교섭이 들어왔던 것이지, 결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 진 건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도면상 다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지, 덮어놓고 실습답으로 돼 있는 땅으로 감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위원 권혁풍**

지금 감정이 돼 있지 않죠.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을 하며는 도시계획 선상에 그 도면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지, 현재마냥 실습답으로 해서 평가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매각할 때는 좀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결코 헐값에 내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됐습니까?

● **위원 권혁풍**

예, 자꾸 말씀드려봐야 그 말씀인데요.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저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해야 겠어요.

아까 이재희위원 질문에 대한 부언입니다.

이재희위원이 폐교재산 심사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반드시 그런 명칭으로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심의기관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희위원님?

● **위원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렇다면 현재도 공유재산 변동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관이 있다며는 그 대행기구도

좋습니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뭐를 지금 교육위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고 하니요, 일선 교육청에서는 자금 순환, 또는 금방 어떠한 자기네 목표대로 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 폐교재산이나 어떤 유휴 재산을 매각하는 데만 주력하는 그런 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존적 가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매각을 신청해 오는데, 내가 각도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도 물어도 우리 도가 매각재산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타도에는 하나도 매각한 재산이 없는 도(道)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도가 많습니다.

그러며는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매각 요청해 오며는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며는 도교육청에서는 확인도 안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심의만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만 안 할 뿐이지, 저희들이 그 공문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이게 팔아야 올은 거냐,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확인을 하는 거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의장 김영세**

그래 어저께 그 학교, 우리가 구강분교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4년 임기동안에 이 폐교재산 순회해 본 중에서 어제 해 본 학교가 가장 보존적 가치가 있어요.

그야말로 산천이, 참 거기 이 경관이 수려하고 이 보존적 가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확인하러 도교육청에서 누가 책임자 선에서 여기 와 본 적이 있느냐”. 내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와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받았 습니다.

아마도 책임자 선에서 확인했으면 이견 보존하라고 지시가 내렸을 거예요.

가보지 않은 탓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매각재산 이제까지 다 다녀봐도 책임자 선에서 와서 확인한 예가 없어요.

앞으로는 부탁하는 게 매각재산이 오며는 좀더 신중히 책임자 선에서 확인을 해 보고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풍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예 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결 결과 전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처리는 마치겠습니다.

기타 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십니까?

● 위원 권혁풍

영동농·공고 부분인데요,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동창회 여론같은 것이 다 이 뭔가 참고가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 의장 김영세

지역주민의 여론은 우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

● 위원 권혁풍

예, 그것도 다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 의장 김영세

예, 서면이 접수돼 있습니다, 현재.

● 위원 권혁풍

접수돼 있습니까?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권혁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리고 이 안건은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기타발언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그러면 이것으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 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권혁풍

기타안건 문제는

● 의장 김영세

예?

● 위원 권혁풍

기타안건 얘기는?

● 의장 김영세

기타안건 물었죠, 아까.

[제51회-제2차]

<p>(장내소란)</p> <p>아, 폐회는 아직 선포 안 했으니깐, 뭐 꼭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p> <p>● 위원 권혁풍</p> <p>안건에 제가 한 말씀.....</p> <p>● 의장 김영세</p> <p>아, 기타안건 아까 내가 물었죠.</p> <p>● 위원 권혁풍</p> <p>미처 못 들었습니다.</p> <p>● 의장 김영세</p> <p>그렇습니까?</p> <p>● 위원 권혁풍</p>	<p>예.</p> <p>● 의장 김영세</p> <p>그러면 꼭 발언하고 싶으십니까?</p> <p>(웃음소리)</p> <p>그럼 다음, 다음 회에 7월 달 회의가 또 있으니깐, 그 때 발언하시죠!</p> <p>● 위원 권혁풍</p> <p>예.</p> <p>● 의장 김영세</p> <p>그러면 이상으로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26분 폐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김근학,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최명선.

※ 부 록

▶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3

(별첨1)

議 事 日 程 (案)

第 51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5.6.22-6.24(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5. 6.22(목) 11:00 13: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5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회 기 6.22-6.24. (3일간)
6. 23(금)	【본회의 휴회】 ※ 의안관련 현장방문 (영동농공고 및 영동미봉국구강분교장)	
6. 24(토)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의결 2. 기타안건 처리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2)

1 / 2

의안번호	제 51-기 호
의 년 월 일	1995. 6. (제 회)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3 회 변 경 계 획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5. 6. 16.

'95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제출년월일 : 1995. 6.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 안 번 호	51-1
------------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내 역
- 취득

(단위: m²/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토 지	52,921		10,121,154		52,921		10,121,154			
건 물	72,324.95		44,310,003		80,570.32		49,063,003		8,245.37	
공 작 물	19 식		470,491		19 식		470,491		0	
계			54,901,648				59,654,648			4,753,000

- 처 분

(단위 : m²/천원)

구 분	당		초		변		정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130,114.6	580,204	156,689.6	649,984	26,575	69,780				
건 물	18,220.34	1,712,840	20,480.98	1,916,726	2,260.64	203,886				
공 작 물	8 식	18,421	8 식	18,421						
계		2,311,465		2,585,131		273,666				

- 유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 분	당		초		변		정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49,483.7	17,658	49,483.7	17,658	0	0				
건 물	3,278.84	251,053	3,278.84	251,053	0	0				
공 작 물										
계		268,711		268,711		0				

- 무상사용허가

구 분	당	초	변	정	감
토 지	15,671		15,671		0
건 물	915.84		915.84		0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내역
=====

시군	구분	재산 별	기관명	사업명	당		변		경		감		사 유	비고							
					면적㎡	금액(천원)	면적(㎡)	금액(천원)	면적(㎡)	금액(천원)	면적(㎡)	금액(천원)									
본청	처분	토지	영농용	농공	실매	지각		6,796	25,485	6,796	25,485	25,485	영농경찰서 신축예정	1p							
								1,350	715,000	1,350	715,000	715,000	과학교육 활성화	2p							
	취득	건물	청	주	과	학	관	축													
청주	건물	취득	국	용	국	암	4,500	6,815.44	3,409,100	2,315.44	1,359,100	1,359,100	96학년도 개교 예정	3-4p							
							4,500	6,756.84	3,409,100	2,256.84	1,359,100	1,359,100	"	5-6p							
							2,835	4,121.67	1,927,000	1,286.67	635,500	635,500	"	7-8p							
							3,465	4,501.42	2,262,800	1,036.42	684,300	684,300	"	9-10 p							
							15,300	22,195.37	11,008,000	6,895.37	4,038,000	4,038,000	"								
영동	처분	토지	미봉	국	강	본	교	폐	교	재	산	매	각	28,439	11,019	28,439	11,019	28,439	11,019	보존불필요- 시설사업 재투자	11- 12p
														137,099	1,274.3	137,099	1,274.3	137,099	137,099	"	11- 12p
괴산	처분	토지	추	산	국	삼	방	본	교	재	산	매	각	15,856	8,760	15,856	8,760	15,856	8,760	보존불필요- 시설사업 재투자	13- 14p
														66,787	986.34	66,787	986.34	66,787	66,787	"	13- 14p

□ 제안 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9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 관계법령 별첨서 : 덧붙임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3)

의안번호	관련 제51-1호
의결 년 월 일	1995. 6. . (제 회)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 출 자	권혁풍 교육위원 외 3인
제출년월일	1995. 6. 24.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51-1호
----------	--------------

발의년월일 : 1995. 6. 24.

발 의 자 : 권혁풍 교육위원
외 3인

1. 수정이유

위 변경계획안중 1995년도 폐지된 영동 미봉국민학교구강분교 매각계획은 현장을 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동교는 강을 끼고 있는 등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매각하기 보다는 현상태로 보존하면서 장차 학생야영장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동계획안중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위 변경계획안중 영동교육청소관 폐지학교인 미봉국민학교구강분교의 토지(11,019㎡, 28,439천원)와 건물(1,274.3㎡, 137,099천원)의 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함.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 변경계획안중 영동교육청소관 폐지학교인 미봉국민학교구강분교의 토지(11,019㎡, 28,439천원)와 건물(1,274.3㎡, 137,099천원)의 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한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구 분	재산 별	학교명	사업명	원안(변경계획안)		수정안		증 Δ감	
				면적(m ²)	금액 (천원)	면적 (m ²)	금액 (천원)	면적(m ²)	금액 (천원)
처 분	토지	미봉국교 구강분교	폐교재산 매각	11,019	28,439	0	0	Δ 11,019	Δ 28,439
	건물	"	"	1,274.3	137,099	0	0	Δ 1,274.3	Δ 137,099